신용 회복 지원 제도 안내

(1)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수단을 통해 회원 금융기관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용회복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무담보채권 및 부동산 외 담보채권은 최장 8년,
	부동산담보채권은 최장 20년)
분할상환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 후 채무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음
이자율 조정	위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를 인하할 수 있음
변제기 유예	최장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채무감면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
	범위 내, 미상각채권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자격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협약가입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 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협약가입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4) 신청방법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한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분	신청절차	비고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로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 신청의사 확인	홈페이지:
	- 신청자격진단을 위한 본인 정보(소득, 채무현	https://www.ccrs.or.kr/
	황, 연락처 등) 입력	전화: 1600-5500 (지역번호없이)
	-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위한 유선상담	방문상담 예약 가능

	- 신청접수 완료	
방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방문	